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 주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5464호)

2024. 2.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정 은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V . 입법의 재정영향	9
V . 참고사항	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주호영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3. 11. 15.

다. 회 부 일 : 2023. 11.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출은 물론 국가이미지 제고, 일자리 창출 등에서 큰 부가가치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특히 현 정부는 ‘미래먹거리 신 성장 국가전략’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야 할 분야로 디스플레이, 첨단 방산 등과 함께 ‘콘텐츠’ 분야를 선정할 만큼 콘텐츠산업의 경제적 가치와 전략적 육성을 강조해 왔음. 하지만, 콘텐츠 산업의 사실상 유일한 지원 제도인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의 비율은 약 25%에 이르는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3~10% 수준으로 책정되어 법 취지 실현과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

특히, 거대 글로벌OTT사들의 공격적인 국내 진출로 인해 제작비 경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국내 사업자들의 재정 적자가 심화되며 경영 위기를 넘어 한국 콘텐츠 산업 생태계가 위협 받고 있어 생태계 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지원 정책이 필요함.

이에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7,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해외 주요 경쟁국 및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준해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15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25조의6).

Ⅲ. 검토의견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현행	개정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 대상: 다음 어느 하나의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국내외 발생비용 ①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② 영화 ③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 공제율: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공제율</th></tr><tr><th>대기업</th><th>중견기업</th><th>중소기업</th></tr><tr><td>기본공제</td><td>5%</td><td>10%</td><td>15%</td></tr><tr><td>추가공제*</td><td>10%</td><td>10%</td><td>15%</td></tr></table> *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시 적용 ※ 개정안 발의 당시 공제율: 대 3%, 중견 7%, 중소 10% ○ 적용기한: 2025. 12. 31.	구분	공제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본공제	5%	10%	15%	추가공제*	10%	10%	15%	☐ 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공제율: 대 15%, 중견 15%, 중소 25% ○ 적용기한: 2026. 12. 31.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구분		공제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본공제	5%	10%	15%													
추가공제*	10%	10%	15%													

* 주호영의원안 2023.11.15. 발의(의안번호 25464)

☐ 개정안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공제율을 상향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25조의6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는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 등(이하 “영상콘텐츠”라 함)의 제작비용의 5~15%(추가공제 요건 충족 시 최대 15~30%)를 세액공제함으로써 관광·수출 등 파급효과가 큰 드라마·영화 등의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영상콘텐츠 제작산업은 지식기반산업으로서 제조업 등과 달리 많은 설비투자가 요구되지 않고 제작비용의 상당부분이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혜택을 받는 데 제한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7년에 동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음¹⁾.

동 제도에 따라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제작비용이 있는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각각 최대 15%(대기업), 20%(중견기업), 30%(중소기업)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또한, 2021년 세법개정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으며, 미국 등 거대 미디어·플랫폼 사업자와 중국 등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신규 사업자들의 진출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Over The Top, 이하 ‘OTT’)를 공제대상으로 추가하였음.

1) 문화체육관광부,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016, p.3 참고

□ 한편, 동 제도에 따른 조세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신고 기준 69억원의 조세지출이 있었고, 2020년에는 99억원, 2021년에는 170억원, 2022년에는 310억원의 조세지출이 발생하여 그 활용도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소득세	0.4	0.7	1	0.8	1	1
법인세	69	98	169	309	324	335
합계	69	99	170	310	325	336

주: 2023, 2024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려는 부분과 ②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첫째, 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국가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영상콘텐츠 산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입법취지가 있음.

영상콘텐츠 산업은 국가의 미래경쟁력이 될 수 있는 고성장 산업으로서 투입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특히 한류의 세계화라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²⁾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최근 2023년 세법 개정 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큰 폭으로 상향되어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이미 어느 정도 달성되어 있는 상황임.

2023년 정기회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10%에서 15%로, 중견기업의 경우 7%에서 10%로, 대기업의 경우 3%에서 5%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2) 이와 관련하여, K콘텐츠 수출이 1억 달러 증가할 때마다 소비재 지출이 1.8억 달러 증가하게 되고, 소비재 수출을 포함한 생산유발효과는 5.1억 달러, 취업 유발인원은 약 3,000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있음(김윤지, 'K콘텐츠 수출의 경제효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22.5. p.27.)

으로 정하는 요건³⁾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의 경우 그 제작비용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공제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음.

[현행법과 개정안의 세액공제율 비교]

구분		공제율		
		대	중견	중소
현행	기본	5%	10%	15%
	추가*	10%	10%	15%
개정안 발의 당시		3%	7%	10%
개정안		15%	15%	25%

*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시 적용

3) 2024년 2월 현재 해당 요건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중(2024.1.25. ~2024.2.14.)이며,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촬영제작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의 비율이 80% 이상이 되어야 하는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함.

□ 둘째, ②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2025년 12월 31일로 규정되어 있는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영상콘텐츠 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긍정적인 입법취지가 있음. 특히, 영상콘텐츠 산업의 특성상 콘텐츠가 기획되어 제작에 착수하고,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기까지 수년의 기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일몰기한을 충분히 연장할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세제상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다만, 동 특례의 타당성·효과성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위해 적용기한이 만료되는 2025년에 심층평가를 거쳐 제도의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IV. 입법의 재정영향

☐ (비용추계서 미제출)

V. 참고사항

☐ 국회입법조사처⁴⁾에서는 “K-영상콘텐츠는 단순히 예술적인 성격을 넘어 산업으로까지 확장되었으며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에서 콘텐츠 산업 육성 및 고용 창출 등을 위해 경쟁적으로 높은 비율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영상콘텐츠 투자활성화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효율적인 세제지원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한 바 있음.

문 의 처
02)6788-5158

4) 국회입법조사처, ‘영상콘텐츠 산업 관련 세제지원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 NARS 현안분석 제298호, 2023.7.28.